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1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1.

발 의 자:서미화・이수진・박해철

박지혜・김 윤・박지원

노종면 • 윤종군 • 김예지

조계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·구조·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 비상계엄,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 상태에 있어서 재난방송의 무가 없으므로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'계엄 상황'을 명문화하여 디지 털 정보를 확대시키고자 함(안 제40조제1항 개정).

또한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준수사항에 장애인이 재난예보·경보체계 접근·이용할 수 있는 '장애인 정보 접근권'보장을 규정하지 않아 재난, 전시, 계엄 등의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'장애인 정보접근권'을 신설하여 재난, 전시, 계엄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 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조에 따른 재해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재난, 「계엄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엄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비계엄, 또는 「민방위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·구조·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(이하 "재난방송등"이라 한다)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,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.
- 7. 장애인이 재난 예보·경보체계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 어,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개 정 안

제40조(재난방송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 2조에 따른 재해, 「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1 제3조에 따른 재난, 또는 「민방위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 나 대피・구조・복구 등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 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 는 민방위경보방송(이하 "재난 방송등"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, 제3호 및 제 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.

- 1. ~ 5. (생략)
- ② (생략)
-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

제40조(재난방송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 2조에 따른 재해, 「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재난, 「계엄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상계엄 및 같은 조 제3 항의 경비계엄, 또는 「민방위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・구조・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 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(이 하 "재난방송등"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 다만. 제2호. 제3 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 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 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-----

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④ ~ ⑦ (생 략)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장애인이 재난 예보·경보체 계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, 문자 등 필요한 수 단을 제공할 것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